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중 요금감면 미신청자 51만 명 발굴,
15일부터 요금 감면 신청 문자(SMS)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11월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요금감면 시행('00년~)

지난 3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하여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①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 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며,

* ☎ 1523 : 이통3사 전용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로 대상 자격확인 시 **가입자가 생년월일 직접입력·상담사 연결(SKT) 또는 센터 상담사가 응대 시 생년월일 확인(KT, LGU+)**
 ※ 유사번호를 주의하시고, 자격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음

그 외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③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하여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계비는 취약계층에게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감면 문자(SMS) 안내 관련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담당자	사무관	이은자 (044-202-3162)



□ 대상별 발송 일정

- 11.15일(수) : 장애인
- 11.16일(목) : 기초생활수급자
- 11.17일(금) : 차상위 계층

□ 안내 문구 (발신번호 : ☎ 1523)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통신요금감면 혜택을 못받고 계신 분은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전화)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하며 ②(온라인)정부 24(www.gov.kr) 및 복지포털(www.bokjiro.go.kr), ③(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요금감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온라인 신청 제외)

□ 통신요금 감면 기준

구 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 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이동전화	·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 요금 중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